

관악구 거주자우선주차(전용, 일반)사용신청서

신청 정보	성명			생년월일(6자리)				
	주소	관악구		(※ 주차신청 주소지 기입)				
	차량번호			핸드폰	-			
	이메일(e-mail)			일반전화				
할인 정보	국가유공	고엽제	장애	5.18민주 유공자	경형승용 (1,000CC이하)	저공해차량 (1~3종)	자원봉사자	병역명문가
			심함 심하지 않음					
가산점	자동차 배출가스 1등급 차량 여부							
신청 내용	희망구간번호 ※ 사용희망 구간번호 기재	① 구간번호 (필수기재)			② 구간번호 (필수기재)			
	사용시간 ※ 사용희망시간 표시(○)	전일(24시간)		주간(09:00~18:00)		야간(19:00~익일08:00)		
구비 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필수 : 차량등록증, 주민등록원조본(주소변동사항 포함),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기타 : 할인관련 카드 또는 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재직증명서, 외국인거소사실증명원, 렌트카계약서 등 전용구획선 신청서류 : 건물주의 건축물관리대장(신설 시), 차량등록증, 개인정보수집동의서(건물주동의서), 주민등록초본 ※ 전용구획선이란? 신청자 집(대문, 점포, 주차장출입구) 앞에 설치된 또는 설치할 구획(※ 건물주 동의 필수) 							
모두의주차장	해피투게더	주차장 함께쓰기		<p>* 주차공유사업이란? 주차난 해소를 위해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대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 주차장 공유(모두의주차장 등) * 해피투게더란? 거주자주차구획 사용자가 외출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시간을 인그 방문차량에게 무료 제공하는 제도 * 주차장 함께쓰기? 배정자 동의 및 신청에 의해 대의 차량을 지정하여 사용</p>				
신청	미신청	신청	미신청	차량번호				
<p>(신청가능)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지역(해당동) 내 전입신고가 된 자 또는 신청지역(해당동) 내 사업장(근무지)을 둔 자는 1세대(1사업장) 1차량에 한해 신청가능. 단, 개인택시, 화물차 1.5톤 미만은 신청가능하나 민원발생 시 배정 취소될 수 있음.</p> <p>(신청불가) 특수차량(사다리차 포함), 버스(16인승 이상), 1.5톤 이상 화물차 등의 차량을 소유한 자. 주차장 법정 설치 의무자가 주차장을 불법용도변경 등으로 고의적으로 사용치 않으며 신청한 경우.</p>								
[신청 및 사용 동의 내용]								
<p>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원가입 후 2년마다 정보제공 재동의를 하여야 하며, 재동의가 없을 시에는 자동탈퇴(개인정보삭제) 됩니다.</p> <p>② 공단 홈페이지 및 직접 방문 신청 시 본인 인증을 위한 핸드폰과 전자 이메일 주소가 필요합니다. [※ 본인명의 핸드폰이 없는 경우 아이핀으로 회원가입 가능 아이핀 발급처 : 각 동 주민센터]</p> <p>③ 신청자 개인정보 변경 시 공단에 반드시 통보하셔야 하며, 미통보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입니다. [※ 취소 및 정보변경으로 발생되는 환불금은 신고일 기준 지급]</p> <p>④ 불법주정차 과태료 3회 이상 체납차량은 배정순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</p> <p>⑤ 거주자우선주차 사용기간은 반기(6개월)이며, 배정심의 기준에 따라 배정되므로 기간종료 후 다음 배정시 탈락 및 구획이 이동될 수 있습니다. (수시분 사용자는 해당 반기 사용기간 만료일까지만 사용) [배정 여부 확인은 신청자 직접 확인 : 홈페이지 및 유선(6월, 12월 둘째 수요일 ※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.)]</p> <p>⑥ 사용자 요청에 따른 공단 부정주차 단속중 사용자가 어린이보호구역, 소화전 앞, 횡단보도 등 불법주차하여 부과된 구청 불법주차과태료는 이의신청시 과태료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</p> <p>⑦ 지정구획, 지정차량, 지정시간 외에 사용불가하며,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 배정취소 됩니다.</p> <p>⑧ 전용구획 및 주차장 함께쓰기는 전일 사용자에 한하며, 6개월 요금 완납 시에만 신청가능 합니다. [※ 건물식 및 평면노외 공영주차장은 주차공유 불가(모두의 주차장, 주차장 함께쓰기, 해피투게더)]</p> <p>⑨ 주차구획 사용 5일전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용이 제한되어 구획사용이 불가합니다.</p> <p>⑩ 우수자원봉사자 할인은 유효기간에 한해 적용되며, 기간만료 시에는 일반요금이 적용됩니다.</p> <p>⑪ 구획 사용 중 발생한 차량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 책임이며, 관리주체는 만행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</p> <p>⑫ 법령 시행, 구 및 공단 정책 시행, 공사 등으로 구획선 석선 또는 폐쇄 시 사용중지(취소) 및 이동될 수 있습니다.</p> <p>⑬ 주차구획 내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고 청결을 유지(쓰레기 등 사용자 청소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⑭ 주차권은 운전석 좌측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하며, 주차권 미부착시 견인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.</p> <p>⑮ 공유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수혜로 인한 배정자가 제도 미이행 및 부정 사용할 경우 배정취소 됩니다.</p> <p>⑯ 2021년 이후 배정받은 차량은 관악구에서 시행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에 동의합니다. [※ 주차공유사업이란? 주차난 해소를 위해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대해 사용하지 않은 시간대 주차장 공유]</p> <p>⑰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 전 희망 구간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하였으며, 주차구획 사용 방법에 대해 동의 합니다.</p>								
<p>상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및 사용 동의 내용·사용규약(뒷면)에 동의하고,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</p>								
20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					
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								
※ 뒷면 관악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용규약 참조					TEL. 2081-2680~3 FAX. 2081-2699			

관악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사용규약

제1조(규약내용)

본 사용규약은 관악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따른 주차구획 사용에 관한 사항들을 내용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시간 · 할인대상자 및 가산점 부여)

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구획 사용요금은 “서울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”를 기준으로 한다.

• 사용시간

구 분	전 일	주 간	야 간	전 용	건물식공영(전일)
사용시간	24시간	09:00~18:00	19:00~익일08:00	24시간	24시간
사용요금	40,000	30,000	20,000	33,000	50,000

• 요금할인대상자

할인율	80%	50%	30%	100%	
구 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1항4,6,12,15,17호와 제73조에 따른 상이증서 소지자,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인명의 차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장애인등록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명의 차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,000cc미만 경형승용 차량5.18민주항쟁유공자 본인명의 차량저공해차량(1~3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우수지원봉사자 (본인명의차량)병역명문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모범납세자 (표지별장기준 1년)

※ 장애 및 국가유공자, 고엽제, 5.18민주항쟁유공자에 대한 할인 혜택은 본인명의 차량에 한함.

※ 우수지원봉사자 : 관악구조례에 의거 관악구청장이 발급한 지원봉사자증 소지자(유효기간에 한해 할인 기간만료 시 정상요금 적용)

• 가산점 부여

1	자동차 배출가스 1등급 차량(표지부착여부 상관없이) 가점 1점 부여	2019년 7월 하반기 수시배정부터 배점 부여
2	주차장 공유사업 참여자 가점 1점 부여	
3	모두의 주차장 참여실적(0~365시간) 가점 1점 부여	2022년 1월 상반기 배정부터 배점 부여
4	주차장 이용기회 공평성에 의거한 배정탈락자(연속) 1회 탈락 가점 2점 부여	

제3조(배정순위 및 방법)

-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구획 사용자격은 다음의 자로 제한하며 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.
 - 우선순위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삼한장애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1항4,6,12,15,17호와 제73조에 따른 상이증서 소지자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 ※5.18유공자 제외 (단, 대상자 본인명의 차량으로 모든 혜택은 1회 1차량에 한하며, 해당동에 주민등록 또는 주소지 확인 가능한 자에 한함)
 - 1순위 : 사용시작일 현재 신청구간(구획)과의 거리 100m 미만에 1년 이상 거주한 자
 - 2순위 : 사용시작일 현재 신청구간(구획)과의 거리 100m 미만에 1년 미만 거주한 자
 - 3순위 : 1~2순위자를 제외한 거주자
 - 4순위 : 시행 지역 내에 소재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또는 상근자, 불법주정차과태료 3회 이상 체납자
- 거주자우선주차의 배정방법은 관악구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에 의거 한다.
 - 우선순위 → 1순위 → 2순위 → 3순위 → 4순위별 고득점자 순으로 배정 (상가우선지역은 상가우선배정기준에 의함)
※ 배정기준의 전입기간 산출은 해당동 최초 전입일을 기준하며, 타지역 변동 시 해당동 재전입일을 기준으로 한다.
※ 각 순위별 동점자 발생 시,
모두의주차장 신청(참여) → 주차장 함께쓰기(참여) → 해피투게더 신청(참여) → 동전입일 → 근거리 → 신청일 순으로 배정

제4조(주차구획 관리 및 차량파손 등의 책임)

본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차량의 파손, 손괴, 도난 등 인적 또는 물적 손해사항의 모든 책임은 주차구획 사용자에게 있으며, 주차구획의 청소 및 제설작업, 환경정비 등도 사용자가 직접 하여야 한다.

제5조(사용변경 및 취소)

차량 또는 사용자에게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단으로 변경사항 통보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사항 미통보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신청자가 짐.

제6조(사용의 제한)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본 주차구획을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- 주차목적 이외의 용도(구획 내 장애물 적치 등)로 본 구획을 사용하는 경우
- 주차구획 이용에 대한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(※ 주차구획 사용 시작 5일전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)
- 기타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로 타 차량의 주차, 운행 등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
- 신청자격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자가 배정을 받았을 경우
- 공유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수혜로 인한 배정자가 제도 미이행 및 부정사용 적발 시
- 취소신청 없이 전출하는 경우
- 거주자우선주차권 및 사용요금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익을 붙여 전대한 경우
- 사용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
※ 사용제한 시 현재 및 다음 배정신청에서 제외

제7조(기타)

본 규약에 이외의 사항은 “거주자우선주차제 규정 및 서울시 관악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”에 따른다.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시설관리공단홈페이지(<http://www.gwanakgongdan.or.kr>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